2018년도 자체 행정감사 주요 지적사항

<사무국 총무과>

Ⅰ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8. 12. 3. ~ 12. 7.

□ 감사범위 : 2015. 9월 ~ 2018. 8월까지 대학 운영 전반

□ 감사대상 부서 : 15개 부서

Ⅱ 주요 지적사항

□ 지적사항 및 처분결과

연번	지적사항	처분
1	연구교수 연구활동 결과 지연 보고	주의
2	공무국외여행보고서 지연 제출	주의
3	교원 외부강의 미신고	주의
4	출석관리부 미제출	주의
5	출석관리부 작성 부적정	경고 및 주의
6	강의시간 개설 부적정	주의 및 통보
7	강의시간 변경원 미제출	주의
8	보강 미실시 등 부적정	경고 및 시정(회수)
9	보강 미실시 등 부적정	경고 및 시정(회수)
10	대학생 집단연수 운영 시 교통안전 확보 서류 미징구	주의 및 통보
11	공무원 여비 청구 부적정	주의 및 시정(회수)
12	골프연습장 코인 판매 수입금 관리 소홀	주의
13	물품관리 부적정	경고 및 주의
14	출장여비 지급 부적정	주의 및 시정(회수)
15	격려금 집행 부적정	주의 및 통보
계		15건

□ 지적사항 세부내용

연번	지적사항	지 적 내 용	처분
1	**연구교수 연구활동 결과 지연 보고**	○「연구교수 규정」 제8조에 따르면 연구교수는 연구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연구활동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 ○○학부 교수 □□□는 2016년도 연구교수로 선정(연구기간 2016. 2. 1. ~ 2017. 1. 31.)되어 연구활동 결과 보고기한(2017. 4. 30.)이 200일이 지난 2017. 11. 16.에 연구활동 결과를 보고하는 등 【붙임】 “연구교수 연구활동 결과 지연 보고 현황” 과 같이 2016. 11.부터 2018. 10.까지 위 □□□ 등 교원 6명은 최소 34일부터 최장 356일까지 연구활동 결과 보고기한이 경과하여 지연 보고한 사실이 있음.	주의(6명)
2	**공무국외여행보고서 지연 제출**	○「한국교통대학교 교육공무원 복무처리 요령」 제5장 공무국외여행 5 보고서 제출등록 및 사후관리 1. 공무국외여행보고서 제출에 따르면 공무국외여행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작성하여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 ○○학과 교수 □□□은 2017. 1. 11.부터 2017. 1. 14.까지 공무국외여행(학회 논문 발표 및 자료조사)을 실시하고 공무국외여행보고서 제출기한(2017. 2. 13.)이 224일이 지난 2017. 9. 25. 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붙임】 “공무국외여행보고서 지연 제출 현황” 과 같이 2016. 11.부터 2018. 12. 감사일 현재까지 위 □□□은 224일, 교수 △△△는 14일을 초과하여 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지연 제출한 사실이 있음.	주의(2명)

연번	지적사항	지 적 내 용	처분
3	교원 외부강의 미신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10조제2항, 「공무원 행동강령」제15조제2항, 「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제16조제2항에 따르면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 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는데도, - ○○학부 교수 □□□은 2017. 1. 6. 09:00부터 2017. 1. 6. 18:00까지 ▲▲에서 요청한 강의를 실시하면서 학장에게 외부강의 신고를 하지 않는 등 【붙임】 “교원 외부강의 미신고 현황”과 같이 2016. 3.부터 2018. 12. 감사일 현재까지 위 교수 □□□ 및 조교 △△△은 ▲▲ 등 3개 기관에서 실시한 4건의 외부강의에 대하여 사전에 학장에게 외부강의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주의(2명)
4	출석관리부 미제출	○「학사운영 규정」제76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르면 교과목 담당교수는 매학기 강의가 종료되면 출석관리부를 정리하여 성적평가서와 함께 소속 학부(과)장 또는 전공주임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학부 시간강사 □□□는 2017학년도 1학기 △△ 과목을 담당하면서 강의가 종료되었음에도 해당 과목 출석관리부를 2018. 12. 3. 감사일 현재까지 제출하지 않는 등 【붙임】 “출석관리부 미제출 현황”과 같이 2017학년도 1학기부터 2018학년도	주의(4명)

연번	지적사항	지 적 내 용	처분
		1학기까지 □□□ 등 교원 4명은 출석관리부를 전공주임에게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5	출석관리부 작성 부적정	○「학사운영 규정」제76조제2항에 따르면 교과목 담당교수는 매시간 강의에 출석한 학생의 출결사항을 점검하고 출석관리부에 기록 유지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학부 교수 □□□은 2015학년도 2학기 △△ 과목을 강의하면서 출석관리부에 강의월일, 출석시수, 결석시수, 출석점수를 기재하지 않는 등 【붙임】 "출석관리부 미기재 현황"과 같이 총 13개 강의를 하면서 2015학년도 2학기부터 2017학년도 2학기까지 출석관리부 기록 유지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학부 교수 ♤♤♤은 2017학년도 2학기 ▲▲ 과목을 담당하면서 2017. 11. 30.에 강의한 보강수업(2017. 12. 7. 강의보강)을 당초 강의일인 2017. 12. 7.로 잘못 기재하고, 2017. 12. 14.에는 실제 수업을 하였음에도 출석관리부에 미기재한 사실이 있음.	경고(1명) 및 주의(1명)
6	강의시간 개설 부적정	○「학사운영 규정」 제65조제1항에 따르면 전임교원의 강의시간은 대학원 강의를 포함하여 1일 6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 ◇◇학부 교수 ○○○는 2017학년도 1학기에 ♤♤ 과목 등 총 3과목을 강의하면서 월요일 7시간, 화요일 8시간을 강의한 사실이 있음.	주의(1명) 및 통보

연번	지적사항	지 적 내 용	처분
7	강의시간 변경원 미제출	○ 「학사운영 규정」 제68조제1항에 따르면 학사일정에 계획이 없는 휴강 또는 담당교수의 출장, 연가, 결근 등 개인사정에 의한 결강은 사전에 강의시간 변경원을 소속 학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도, - ○○전공 교수 △△△은 공무국외여행(2017. 6. 14. ~ 2017. 6. 21., 국제 교류 협정 체결 및 유학생 유치 대학 홍보)으로 강의가 불가능한 ◇◇ 교과목을 2017. 6. 15.로 강의 변경하겠다고 강의시간 변경원을 제출하고도 강의시간 변경원을 다시 제출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2017. 6. 12. 보강을 실시하는 등【붙임】 “강의시간 변경원 미제출 현황” 과 같이 2016. 10.부터 2017. 12.까지 위 △△△ 등 교원 10명은 사전에 강의시간 변경원을 제출하지 않고 총 16개 교과목에 대하여 임의로 보강일을 변경하여 보강을 실시한 사실이 있음.	주의(10명)
8	보강 미실시 등 부적정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한국교통대학교 강의윤리 강령」 제4조 및 제7조에 따르면 교원은 법적 의무를 넘어 고도의 윤리적·도덕적 기준으로 성실하고 정직하게 강의를 진행하여야 하고, 교원은 본교가 정하는 수업일수를 준수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강의를 취소 또는 변경해서는 아니 되며, 강의 일정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학생들에게 미리 통보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임의적으로 학생의 수강권을 박탈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고, 「강사료지급규정」 제4조에 따르면 초과강사료는 책임시간을 초과하여 강의한 전임교원에게 실제 강의한 시간수에 의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경고(2명) 및 시정(1명)

연번	지적사항	지 적 내 용	처분
		- ◇◇학과 교수 ♤♤♤은 2015. 10. 9. ▲▲대학원 ○○교과목을 2015. 12. 11. 강의하는 것으로 2015. 10. 28. 지정 보강일 통보(학사관리과-3375, 2015학년도 2학기 지정 보강일 안내)를 받고도 공무국외여행(2015. 12. 10. ~ 2015. 12. 14., 2015 국제학술대회 논문 발표)으로 인하여 변경된 강의일에 보강을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학부 교수 ○○○은 2017. 11. 13. ♧♧대학원 ●● 교과목을 2017. 11. 17. 강의하는 것으로 강의시간 변경원을 제출하고도 공무국외여행(2017. 11. 16. ~ 2017. 11. 19., 국제세미나 참석 및 주제발표)으로 인하여 변경된 강의일에 보강을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고, 미보강한 ◎◎교과목에 대한 초과강사료 30천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9	**보강 미실시 등 부적정**	○「학칙」 제30조 및 「학사운영 규정」 제68조에 따르면 학사일정에 계획이 없는 휴강 또는 담당교수의 출장, 연가, 결근 등 개인사정에 의한 결강은 사전에 강의시간 변경원을 소속 학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해당 학기에 보강하도록 되어 있으며, 「강사료지급규정」 제4조에 따르면 초과강사료는 책임시간을 초과하여 강의한 전임교원에게 실제 강의한 시간수에 의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학부 교수 ♤♤♤은 2016. 12. 9. △△처에서 지원한 연구과제 □□회의 참석을 목적으로 출장을 실시하여 당일 ◎◎교과목에 대해 수업을 하지 않았음에도 강의실적부에 수업을 한 것으로 기재하고 미보강 시수 3시간에 대한 초과강사료	경고(2명) 및 시정(2명)

연번	지적사항	지 적 내 용	처분
		90천원을 지급받는 등 【붙임】 “결강에 대한 보강 미실시 및 초과강사료 부적정 수령 현황”과 같이 2016학년도 2학기부터 2018학년도 1학기까지 위 ♤♤♤ 등 교원 2명이 출장으로 수업을 하지 않았음에도 미보강 시수 총 5시간에 대한 초과강사료 합계 150천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10	**대학생 집단연수 운영 시 교통안전 확보 서류 미징구**	○ 대학생 집단연수 운영 안전 확보 매뉴얼(2014년 교육부 제작·배포) 및 전세버스 입찰 및 계약 시 정보제공 등 안전강화 방안 추가 보완 사항(교육부 운영지원과-19482, 2015.08.10.)에 따르면 교외에서 진행하는 각종 연수와 관련하여 차량 임차 계약 시 해당차량의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교통안전공단) 및 운행기록증을 철저히 확인하여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 ◯◯에서는 2018. 2. 20. ‘2018학년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위해 차량 임차 계약을 추진하면서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및 운행기록증을 징구하지 않는 등 【붙임】 “각종 행사 버스 임차 계약 시 서류 미징구 현황”과 같이 위 ◯◯ 등 4개 부서는 2015. 10. 26.부터 2018. 7. 13.까지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총 33건 및 운행기록증 총 17건을 징구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기관주의(4건) 및 통보
11	**공무원 여비 청구 부적정**	○「공무원여비규정」 제8조에 따르면 출장 내용에 따라 교통비를 제외한 일비·식비는 실제 소요 일수(1일) 만큼만 청구·수령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주의(1건) 및 시정(1명)

연번	지적사항	지 적 내 용	처분
		- □□학부 교수 ○○○은 2016. 3. 11. ▲▲연구과제 수행 목적(출장지 : 서울, 09:00~18:00)으로 출장을 수행하고 산학협력단 회계에서 여비 45천원을 수령하고도 같은 날 △△컴퍼런스 참석 목적(출장지 : 청주, 13:00~18:00)으로 수행한 출장에 대한 여비를 중복 신청하여 대학회계에서 여비 36천원을 중복 수령한 사실이 있음.	
12	골프연습장 코인판매 수입금 관리 소홀	○「국고금 관리법」제4조제4호에 따르면 수입금을 관리하는 사람은 수입 및 지출 등과 관련된 사항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기록·관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제11조, 제13조 및「같은 법률 시행규칙」제11조에 따르면 국립대학의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편입한 후에 이를 사용하여야 하고, 세입 및 세출 예산은 대학회계의 예산으로 편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 ○○은 2016. 3. 2.부터 2017. 12. 20.까지 골프연습장 코인 판매 수입금을 관리하면서 2016학년도에는 대장판매금액(2,841천원)보다 19천원을 초과하여 2,860천원을 세입으로 편입하였고, 2017학년도에는 대장판매금액(1,159천원) 중 1,134천원만 세입으로 편입하고 25천원을 세입으로 편입하지 않고 코인 판매 보관함에 보관하는 등 골프연습장 코인 판매 수입금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기관주의

연번	지적사항	지 적 내 용	처분
		※ 골프연습장은 태풍으로 훼손되어 2017. 7월부터 폐쇄 처리됨 ※ 미세입금액(25천원)은 2018. 12.21. 대학회계 세입조치 완료	
13	물품관리 부적정	○「물품관리법」 제26조에 따르면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이 법과 그 밖의 물품관리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는 것 외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무에 종사하여야 하고, 물품운용관은 「같은 법」 제11조 및 제30조에 따라 그가 소속된 관서의 공무원에게 국가의 사무 또는 사업의 목적과 용도에 따라서 물품을 사용하게 하고, 물품은 국가의 시설에 보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물품이 없어지면 그 사실을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물품사용공무원은 「같은 법」 제27조 및 제30조에 따라 물품은 국가로부터 양수할 수 없고 국가의 시설에 보관해서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도, - ○○학과 △△△은 2017. 9. 1. □□대학교 전임교수로 채용되면서 한국연구재단 신진연구자지원사업으로 취득한 노트북컴퓨터 (CN/NT500R3W-KD3S, 취득일 : 2017. 5. 10.) 2대를 국가시설 이외로 무단 반출하여 사용한 사실이 있고, ○○학과 학과장 ♤♤♤(2016. 7. 1.~2018. 6. 30.) 및 학과장 ☆☆☆(2018. 7. 1.~현재)은 물품운용관으로서 △△△이 2018. 11. 26. 물품반납확약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위 노트북 2대를 무단 반출한 사실조차 알지 못하는 등 물품운용관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게을리 한 사실이 있음.	경고(1건) 및 주의(2명)

<table>
<tr><th>연번</th><th>지적사항</th><th>지 적 내 용</th><th>처분</th></tr>
<tr><td></td><td></td><td>※ 무단 반출한 노트북은 2018. 12. 31. 반환 완료</td><td></td></tr>
<tr><td>14</td><td>출장여비 지급 부적정</td><td>○「공무원여비규정」 제28조 및 「한국교통대학교 2017학년도 대학회계 세출예산 집행 지침」 여비 집행 세부 기준에 따르면 충주 의왕간 캠퍼스 이동여비는 55천원을 정액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은 2017. 5. 16. ㅁㅁㅁ의 출장(과·실장회의)에 대하여 2017. 5. 25. 55천원을 지급하고도 같은 날 55천원을 중복 지급한 사실이 있고, 2017. 6. 30. △△△의 출장(직원회 물품 수령)에 대하여 2017. 7. 10. 75천원을 지급하여 20천원을 초과 지급한 사실이 있음.

【표】 여비 지급 현황 (단위 : 천원)
<table>
<tr><th>소속</th><th>성명</th><th>출장 목적</th><th>출장일</th><th>지급일</th><th>지급 단가</th><th>실제 지급액</th><th>과오 지급액</th><th>비고</th></tr>
<tr><td rowspan="2">제5행정실</td><td>ㅁㅁㅁ</td><td>과·실장 회의 참석</td><td>2017-05-16</td><td>2017-05-25</td><td>55</td><td>110</td><td>55</td><td>중복</td></tr>
<tr><td>△△△</td><td>직원회 물품 수령</td><td>2017-06-30</td><td>2017-07-10</td><td>55</td><td>75</td><td>20</td><td>초과</td></tr>
<tr><td>계</td><td></td><td></td><td></td><td></td><td></td><td>185</td><td>75</td><td></td></tr>
</table></td><td>주의(2명)
및 시정(2명)</td></tr>
<tr><td>15</td><td>격려금 집행 부적정</td><td>○「국가재정법」 제4조 및 「2017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조직 및 기관을 대표하여 행하는 우수 부서 및 직원 등에 대한 격려금은 기타운영비 비목에서 집행하여야 하는데도,

- △△은 2017. 9. 27. 2017학년도 축제 격려금을 지급하면서 학생 ○○○에게 업무추진비 비목에서 20만원을 집행한 사실이 있음.</td><td>기관주의
및 통보</td></tr>
</table>